

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6년 2월 5일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1)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3월 20일, 포항시장
- 2) 회부일자 : 2026년 3월 23일
- 3) 상정일자
 - 제329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 -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(2026. 4. 3.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신정희 재정관리과장)

1) 제안이유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호에 의한 도시지역에 대하여 「지방세법」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고자 함.

2) 주요내용

가.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(2026.01.기준)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
- 고시면적 : 393,142,763㎡, 포항시 전체면적 1,244.88km² 대비 32.09%

3) 관계법령

- 「지방세법」 제112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박종율)

- 본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포항시 시세 조례 제13조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,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